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6월 10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과장)

가. 제안이유

- 평창군 인구의 급격한 자연감소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외부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전입지원금을 상향 조정(5만 원 → 30만 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구정책 사업 지원내용 명칭 간소화(안 제6조의2)
- 전입지원금 상향 조정(조례안 별표)
- 종전의 세부지원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조례안 별표)
- 전입지원금 소급 규정(조례안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5. 5. 30.
- 회부일자 : 2025. 6. 9.
- 상정일자 : 2024. 6. 10.

2. 제안이유

- 평창군 인구의 급격한 자연감소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외부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전입지원금을 상향 조정(5만 원 → 30만 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구정책 사업 지원내용 명칭 간소화(안 제6조의2)
- 전입지원금 상향 조정(조례안 별표)
- 종전의 세부지원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조례안 별표)
- 전입지원금 소급 규정(조례안 부칙)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나. 입법의 취지

- 전입지원금 상향을 통해 평창군의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6조(인구정책 사업 지원내용)에서 지원내용의 명칭을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으로 간소화하여 정비함.
- 안 별표에서 전입지원금을 1인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시기를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음.

- 안 부칙에서 상향된 전입지원금의 지급시기를 2025년 5월 1일 이후 전입한 자에게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

5. 종합검토의견

- 전입지원금 상향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평창군의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취지는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3
----------	-----

제출연월일 : 2025. 5. 30.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25년 4월 기준 평창군 인구는 40,038명으로, 최근 4개월간 267명이 순감소하여 평창군 인구 4만 명이 붕괴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인바, 급격한 자연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임.

외부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전입지원금을 상향 조정(5만 원 → 30만 원)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인구정책 사업 지원내용 명칭 간소화(조례안 제6조의2제2호 및 제3호)
- 나. 평창군 인구 4만 명 저지를 위한 전입지원금 상향 조정(조례안 별표)
- 다. 종전의 세부지원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조례안 별표)
- 라. 개정안에 따른 전입지원금은 2025년 5월 1일 이후 전입한 자에게 소급하여 적용(조례안 부칙)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에 475,200천원 반영 계획임.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4. 25. ~ 2025. 5.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669호, 기획예산과-6612(2025. 4. 25.)호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예산과-6552(2025. 4. 24.)호].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기획예산과-6552(2025. 4. 24.)호].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14708(2025. 4. 14.)호].

5) 법제심사 : 적정[기획예산과-7524(2025. 5. 19.)호]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원안의결[기획예산과-7931(2025. 5. 26.)호]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종량제봉투
3. 영화관람권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별표 개정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전입지원금은 2025년 5월 1일 전입한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

세부 지원 기준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자격*	비고 (지원시기)
평창군 전입세대	전입지원금** (평창사랑 상품권)	1인 30만 원		
	쓰레기봉투 (20ℓ)	세대당 20매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평창군으로 전입한 사람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영화관람권***	1인 1매		

주) 모든 지원은 대상자별 1회에 한함.

* 위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여야 함.

** 전입지원금은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평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

*** 영화관람권은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음.

신 · 구조문대비표(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2(인구정책 사업 지원 내용) ① 군수는 인구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생 략) <u>2.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급</u> <u>3. 전입자 평창시네마 영화관람권 지급</u> ② (생 략)</p>	<p>제6조의2(인구정책 사업 지원 내용)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u>2. 종량제봉투</u> <u>3. 영화관람권</u> ②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령 발췌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법률 제20112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전입지원금 상향 지급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 관련조문

제6조의2(인구정책 사업 지원내용) ① 군수는 인구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입지원금
2. 종량제봉투
3. 영화관람권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4년 평창군 전입지원금 지원액을 바탕으로 비용을 추계함.

나. 추계 결과(세출): 연 1,500명 기준으로 추계함.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소요액	475,200	475,200	475,200	475,200	475,200	2,376,000
전입지원금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250,000
종량제봉투	14,700	14,700	14,700	14,700	14,700	73,500
영화관람권	10,500	10,500	10,500	10,500	10,500	52,500

※ 2024년 871가구 1,414명 지급 / 2025년 1~3월 285가구 356명 지급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 조달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연락처	(033) 330 - 2056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475,200	475,200	475,200	475,200	475,200	2,376,000
전입지원금 지원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250,000
종량제봉투 지원	14,700	14,700	14,700	14,700	14,700	73,500
영화관람권 지원	10,500	10,500	10,500	10,500	10,500	52,500
채원 조달	475,200	475,200	475,200	475,200	475,200	2,376,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보조금	-	-	-	-	-
	지방교부세	-	-	-	-	-
자체 수입	소 계	475,200	475,200	475,200	475,200	2,376,000
	지방세	-	-	-	-	-
	세외수입	-	-	-	-	-
	군비	475,200	475,200	475,200	475,200	2,376,000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민간자본	-	-	-	-	-	-
해외자본	-	-	-	-	-	-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